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

제출연월일 : 2008. 6.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법인청산 이행 추진중이나 법인해산 의결 전 공사 경영개선을 위하여 자체 조직진단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공사조직의 축소조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내용과 공사조직진단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조직슬림화를 위해 현행 11개팀을 6개팀으로 축소(“별표1”을 개정)

3. 참고사항

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설치조례」 제7조(정관) 제2항

-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제 호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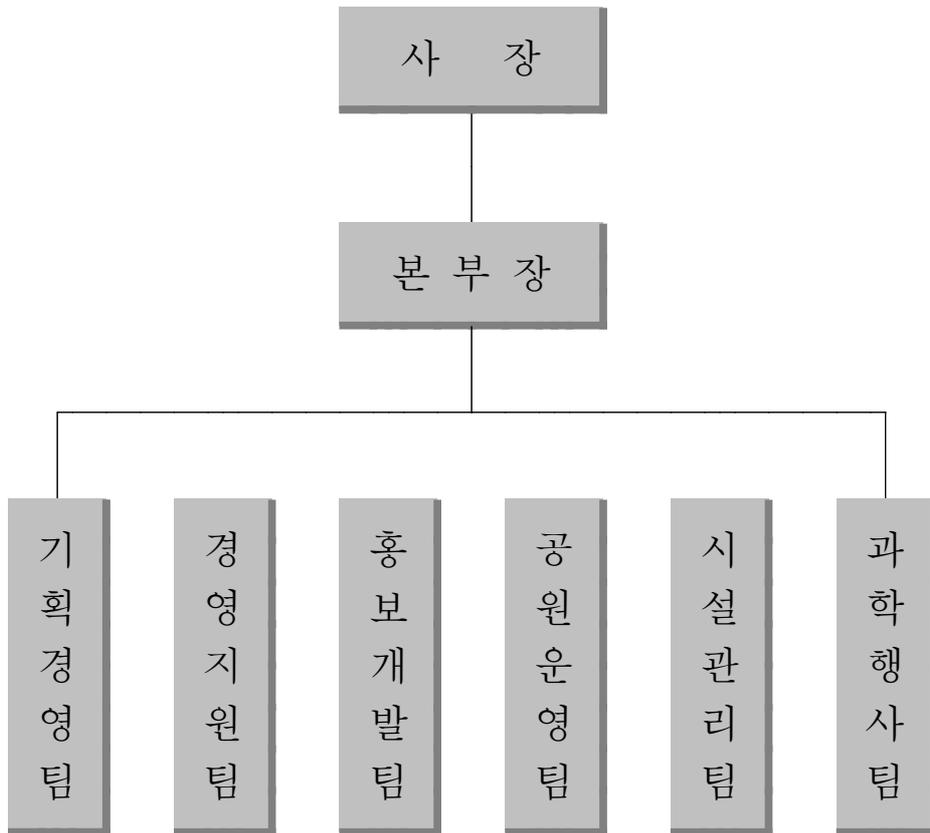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 機構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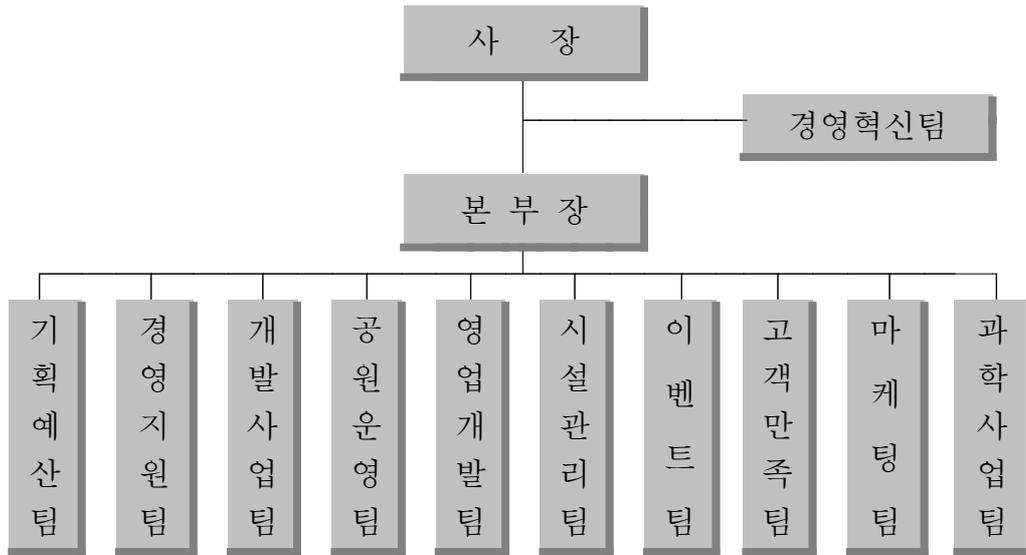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기구표 신·구 대비표

현 행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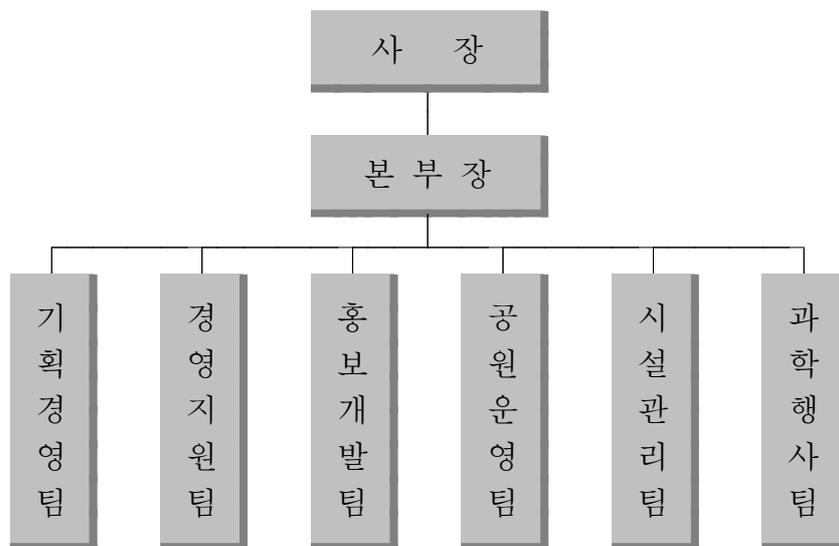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기구표



개 정

[별표 1]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기구표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8조 (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제7조 (정관) ① <생 략>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제28조(임직원 및 하부조직) ①<생 략>

②<생 략>

③기구와 정원은 별표 1, 2와 같다.

④<생 략>